

#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## <목 차>

1.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

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소관부처 및<br>작성자 인적사항 | 소관부처        | 교육부     | 작성자 | 이름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담당부서<br>(과) | 학교혁신정책과 |     | 직급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국장          |         |     | 연락처 | 044-203-6315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과장          |         |     | 이메일 | lovemind88@korea.kr |

정책책임자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기본<br>정보   | 1.규제사무명                 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 관련 규정 정비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2.규제조문                   |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등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3.위임법령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4.유형                     | -   | 5.입법예고 | 2019.11.27.~2020.1.6. |         |
|            | 6.검증단계                   | ○ 사전규제심사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규제의<br>필요성 | 7.추진배경<br>및 정부개입<br>필요성  | ○ 서열화 된 고교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<br>- 국정과제 50-2-1. 고교체제개편 및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('19.11.7.) 이행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8.규제내용                   | ○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 관련 조항 정비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9. 피규제 집단<br>및 이해관계자     | ○ 피규제자 : 자사고, 외고, 국제고, 자공고, 전국단위 모집 자율학교<br>○ 이해관계자 : 학생·학부모 등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10.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| ○ 그 간 경제력 등에 따라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입학기회가 제한되었으나, 일반고로 전환됨으로서 모든 학생이 해당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갖게 됨<br>○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추어 모든 학교가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규제의<br>적정성 | 11.비용편익분석<br>(단위:백만원/1년) |   | 비용     | 편익                    | 순비용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규제자  | 0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|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피규제자<br>이외  | 0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| 0       |
|            | 12.영향평가<br>여부            | 기술영향평가  | 중기영향평가 | 경쟁영향평가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| 해당없음  | 해당없음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기타         | 13.일몰설정<br>여부            | 해당없음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           | 14.비용관리제<br>(단위:백만원)     | 적용여부  | 비용     | 편익                    | 연간균등순비용 |
| 해당없음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0   | 0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<조문 대비표 예시>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<b>제76조의3(고등학교의 구분)</b>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고등학교(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li> <li>2.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</li> <li>3.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</li> <li>4. <u>자율고등학교(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)</u>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| <p><b>제76조의3(고등학교의 구분)</b> (현행과 동일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일반고등학교(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,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li> <li>2. ~ 3. (현행과 동일)</li> <li>4. <u>(삭 제)</u></li> </ol> |
| <p><b>제77조(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생략)</li> <li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<u>후기학교(제90조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)</u>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.</li> </ol>   | <p><b>제77조(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)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현행과 동일)</li> <li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에 따른 <u>후기학교</u>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.</li> </o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b>제81조의2(학생모집의 특례)</b>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입학전형실시권자와 교육부장관이 미리 협의하여 정한 범위에서 <u>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의 중학교에 재학한 자(제8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고등학교가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자)를 모집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그 모집비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의 지원원칙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「<u>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</u>」 별표 1에 따른 교직원인건비 및 학교·교육과정 운영비를 지급받지 아니할 것</li> </ol> | <p><b>제81조의2(학생모집의 특례)</b> (삭 제)</p>   |

2. 매년 학교법인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입되는 금액(이하 "법인전입금"이라 한다)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

3.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,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

**제90조(특수목적고등학교)**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(이하 "특수목적고등학교"라 한다)를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 다만,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다.

1. 삭제
2. 삭제
3. 삭제
4. 삭제
5.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

6. **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**

② (생략)

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, 제6호 및 제10호(국립·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)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·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·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
2.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
3.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90조(특수목적고등학교) ① (현행과 동일)**

1. ~ 5. (현행과 동일)

6. (삭제)

② (현행과 동일)

③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(국립·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)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지정·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④ (현행과 동일)

1. ~ 4. (현행과 동일)

|   |  |
|---|--|
| <p>4.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</p> <p>5. 교육감이 5년마다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<u>(신 설)</u></p> <p>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, 제6호 및 제10호(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)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 | <p>5. 교육감이 5년마다 시·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. <u>다만, 제90조제1항 제6호는 제외</u></p> <p>⑤ 교육감이 제1항제5호 및 제10호(공립·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)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p> |
| <p>부 칙 &lt;대통령령 제21375호, 2009. 3. 27.&gt; 제4조(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제105조에 따라 <u>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제105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</u></p> <p>제5조(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) ① 이 영 시행 당시 <u>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</u>로서 이 영 시행 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의 장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계속 지정되는 한 <u>제81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지원에 의하여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</u></p> | <p>부 칙 &lt;대통령령 제21375호, 2009. 3. 27.&gt; 제4조(입학전형 지원 등의 경과조치) (삭 제)</p> <p><u>제5조(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기간 종료에 따른 경과 조치) (삭 제)</u></p>  |

#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고교서열화로 인해 고입단계 사교육 심화 및 부모 소득에 따른 교육기회 불평등 발생
  - 고교단계에서 형성된 불공정한 교육기회는 대입결과에도 영향되고 있어, 고교체제 정비 필요
- 본래 설립취지와 달리 운영되는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필요

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 ① 대안의 비교

#### ○ 규제대안의 내용

|       |     |  |
|-------|-----|--|
| 규제대안1 | 대안명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 관련 규정 정비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내용 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 |
| 규제대안2 | 대안명 | 해당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내용  |  |

#### ○ 규제대안의 비교

| 구분    | 장점  | 단점  |
|-------|---|---|
| 현행유지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 고교 진학 시 다양한 학교유형 선택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은 당초 학교유형 다양화 당시의 목적 대신 입시위주의 교육을 시행하여 고교단계 서열화 심화</li> <li>○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유발</li> <li>○ 해당 학교들의 등록금도 높아 경제력에 따라 교육기회도 불균등하게 제공</li> <li>○ 특정학교로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을 유발하여 일반고</li> </ul> |

|       |  |  |
|-------|--|--|
|       |  | <p>교육력 저하 유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입 등에서 특정학교가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불공정한 교육 유발</li> </ul> |
| 규제대안1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여, 학생선발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하고,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사라져 교육기회 확대</li> <li>○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해당 학교들의 특성화된 교육과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보장</li> <li>○ 모든 학생의 적성·소질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</li> <li>○ 고교진학을 위한 사교육 경감</li> <li>○ 고교체제 단순화로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 공정성 확보</li> </ul> |  |
| 규제대안2 | 해당없음   |  |

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| 이해관계자명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| 조치결과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|
| 전국시·도교육감협의회(11.4.)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</li> <li>- 학교 유형 분리는 소수학생에 집중하는 교육으로 보다 많은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고 중심 교육 필요</li> </ul> |      |
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시도별 담당자(11.19.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을 통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필요</li> </ul>  |      |
| 외고 관계자(11.21.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열화 된 고교체제 개편 필요성 및 전환 시 학교운영 설명</li> </ul>   | 해당없음 |

##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

-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에 대해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지정취소를 추진하였으나, 재학생 학부모·학생 등 사회적 갈등은 커지고, 정책 실효성은 떨어져 새로운 대안 모색 필요
-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전환은 재학생·학부모·학교 측이 일반고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 5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기간 부여
- 학령인구 감소,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소수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·소질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고교교육 기반 마련 필요
- 해당 학교 유형은 시행령을 통해 신설되었으므로,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학교 유형 정비 가능

### 3. 기대 효과

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가 단순화 되고, 일반고 중심의 교육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제공이 가능
- 특정학교가 유리한 교육에서 탈피하여 고교교육의 공정성 강화
- 일반고 중심으로 모든 학생의 적성·소질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, 2025년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의 교육 선택권도 강화

## II. 규제 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고교단계의 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의 학생 선발방식, 입학시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,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지정취소 등을 추진하였으나, 여전히 고교서열화가 해소되고 있지 않아 기존 방식에서 보다 나아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였음
- 이에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였고, 일반고 전환 후에도 학생선발방식 외에 학교 명칭 사용,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은 보장하여, 학교 측의 자율성을

최소한으로 규제하였음

- 또한,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학생선발은 평준화 지역은 시·도교육감이 추천·배정하고,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장이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에도, 해당 학교들은 모집단위, 지역 등에서 특혜를 받아왔기에 다른 학교들과 동등하게 변경하는 것으로, 규제라 보기 어려움

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| 영향평가 |      |      | 시장유인적<br>규제설계 | 국제기준<br>정합성 | 일몰 설정<br>여부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기술   | 경쟁   | 중기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 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| 해당없음        |

### ○ 영향평가

#### - 기술규제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- 경쟁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- 중기영향평가

- 해당사항 없음

### ○ 기타 고려사항

#### 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- 국제 기준 정합성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- 일몰설정 여부

- 해당사항 없음

- 원칙허용·예외금지 규제방식(네거티브 규제)적용 여부
- 해당사항 없음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#### ○ 해외사례

- 영국은 일반학교 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, 전체 80% 이상(2,542교) 학교를 교과 특성화학교로 운영하고 있음
- 미국도 일반학교 내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, 핀란드도 모든 학생 대상 수준별 교육을 실시 중

#### ○ 타법사례

- 해당사항 없음

### 4. 비용편익 분석

<규제대안 1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>

① 비용편익분석 :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직접비용 없음

| 가격기준연도                      | 현재가치 기준연도 | 분석대상기간 (년) | 할인율(%)    | 단위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2025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     | 10         | 0         | 백만원, 현재가치  |
| 규제대안 1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영향집단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비용         | 편익        | 순비용        |
| 피규제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       | 직접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간접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2,374,074 | -2,374,074 |
| 정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,374,074  |           | 2,374,074  |
| 총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,374,074  | 2,374,074 | 0          |
| 기업순비용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0          | 연간균등순비용   | 0          |

### Ⅲ. 규제 의 실효성

#### 1. 규제 의 순응도

##### 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 학교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근거로 반발이 예상되나, 보다 많은 학생들의 교육선택권, 교육기회의 공정한 부여 및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 판단됨

##### ○ 규제 차등화 방안

- 해당사항 없음

#### 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##### 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- 현행 행정인력으로 집행 가능

##### 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별도 예산 증액없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 가능

#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# 1. 추진 경과

-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: '19.11.7.  
\*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의견 수렴 : '19.11.4.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관련 시·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 개최 : '19.11.19.
-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논의 : '19.11.20.
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개정계획 수립 : '19.11.20.
- 외교 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: '19.11.21.
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안 관계기관 의견

조희 : '19.11.27.~

- 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: '19.11.27. ~ '20.1.6.

## 2. 향후 계획

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를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 1일 일괄 일반고로 전환
-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기 전 5년 간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고, 학생의 진로교육, 과목선택권을 강화하고, 교원의 역량 강화 및 미래 학교공간 혁신 등을 추진
- 2025년 3월 1일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여 모든 학생이 다양한 적성·소질을 보장하고, 학교 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, 학교 간 교육프로그램 교류 등을 확산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하는 고교교육 강화

## 3. 종합결론

-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여 고교서열화 해소 필요
  -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경감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다양한 성장 경로 지원
  - 경제력과 무관히 모든 학생에 다양한 교육기회가 공정하게 보장
  - 특정고교 진학이 대입, 취업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 개선
- 학교 유형 분리를 통한 소수 학생에 집중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대다수의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의 다양한 적성·소질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초석 마련 필요

**별첨**

**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**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| 가격기준연도 | 현재가치 기준연도 | 분석대상기간 (년) | 할인율(%) | 단위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
| 2025   | 2025      | 10         | 0      | 백만원, 현재가치 |

규제대안 1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

| 영향집단                 |    | 비용        | 편익        | 순비용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피규제 기업<br>· 소상공인     | 직접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간접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 일반국민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기업<br>· 소상공인 |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       |    |           | 2,374,074 | -2,374,074 |
| 정부                   |    | 2,374,074 |           | 2,374,074  |
| 총 합계                 |    | 2,374,074 | 2,374,074 | 0          |
| 기업순비용                |    | 0         | 연간균등순비용   | 0          |

## 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·편익 분석 결과

### <규제대안 1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>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 자사고·외고·국제고

직접비용 : 학교 측에 발생하는 비용 없음

|         |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|--|-----|-------|----------|
| 업무제목   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이해관계자·정부의 비용·편익 분석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설명      | 2018학년도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결산 자료를 활용하여 자사고·외고·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시 정부가 지원하여야 하는 학부모·학생의 등록금 등 발생비용을 산출함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세분류    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소요재정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활동제목    | 자사고·외고·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시 일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비용과 동일한 수준 지원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비용항목    | 기타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비용      | 10년 간 2,374,074백만원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활동비용 특성 | 반복적/비균등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산식      | * 기준비용 =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중 사립학교(59교)가 일반고로 전환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용(현재 일반 사립학교와 동일한 수준)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<연도별 비용 발생표(단위 : 억원)>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구분   | 1차년 | 2차년   | 3차년~10차년 |
|         | 59개교   | 879 | 1,758 | 2,637    |
|         | * 학령인구 감소, 해당 학교에 대한 선호도 등 변수는 예측하기 어려워 '18년 결산 기준 학생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* 물가상승률 등 변수는 고려하지 않음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* 자발적 전환학교,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연차별 소요예산은 차이 발생 가능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근거설명    | *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59교와 유사한 학급 수를 보유한 일반 사립고에 지원되는 재정결함보조금 산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* '19.4.1 교육통계 기준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59교 학생(49,270명)에 지원할 무상교육 지원금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|
|         | * 자사고·외고·국제고 59교에 既 지원 중인 정부지원금 등은 차감  |     |       |          |